



## 중앙전파관리소가 하는 일

## 안전하고 편리한 전파방송통신, 함께하는 중앙전파관리소

### 1 디지털 전파·방송통신 재난 위기 대응

-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
- 방송통신설비 안전점검 및 기술기준 적합조사
- 전파감시, 전파교란 대응
- 전파혼신처리 및 중요통신망 보호
- 전파차단장치 제조·수입 등 인가 및 사용신고
- 국내·외 위성전파감시 및 국내 위성망 보호 활동
- 불법무선국 조사·단속
- 무선국 기술기준 및 허가사항 위반 조사·단속

### 2 전파·방송통신 이용자 권익보호

-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·단속
- 불법감청설비 조사·단속 및 탐지업 등록·관리
-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용 준수 관리·감독
- 무선국 전자파 관리
- TV방송 수신장애 조사
- 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 지정·신고
-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위반행위 사실조사
-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표준음량 기준 준수 조사
-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실태검사

### 3 편리한 전파·방송통신 행정서비스

- 무선국 허가·검사, 방송국 검사
- 공중케이블 점검
- 방송통신사업 등록·관리
-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
- 유료방송사업자 허가 조건 이행 점검
- 전파사용료 부과·징수
- 전기통신설비 제공 이행실태 관리
- 전파환경 수탁 측정 및 누설전자파 조사
- 정보통신방송분야 비영리법인 허가·감독

### 4 국제협력 및 전파교육

-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국제 표준화 활동
-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
- 어린이 전파교실

### 중앙전파관리소

1947년부터 우리나라의 전파를 관리하고,  
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입니다.  
국민이 편리하게 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 
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  
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



인터넷 전자민원 [emsit.go.kr](http://emsit.g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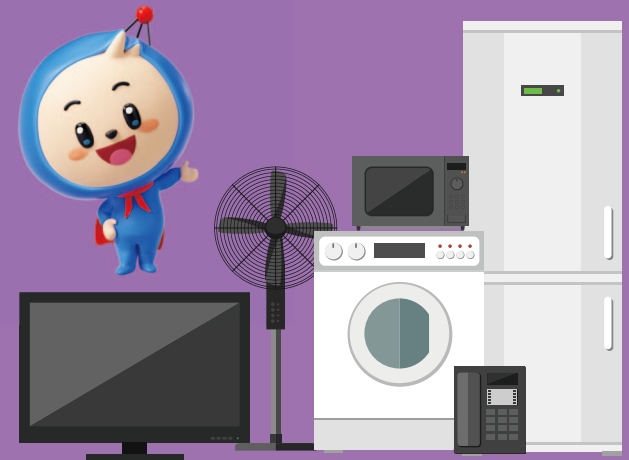
민원상담 080-700-0074 / 02-3400-2000



기관명	주소	전화번호
중앙전파관리소	(05830)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	02-3400-2000
위성전파감시센터	(17413)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00	031-644-5900
서울전파관리소 - 서울북부사무소	(08249)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-43 (11604)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	02-2680-1700 031-849-5800
부산전파관리소	(46703)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-17	051-974-5100
광주전파관리소	(58214)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-24	061-330-6800
강릉전파관리소	(25428)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-31	033-660-2980
대전전파관리소 - 당진사무소	(35283)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(31754)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	042-520-4100 041-360-2800
대구전파관리소	(42043)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	053-749-2800
전주전파관리소	(55316)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	063-260-0070
제주전파관리소	(63037)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	064-740-2800
청주전파관리소	(28567)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길 30	043-261-5811
울산전파관리소	(45013)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-6	052-231-8810

안전하고 편리한 전파방송통신, 함께하는 중앙전파관리소

방송통신기자재  
안전한 제품을  
사용합시다!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 
중앙전파관리소



## 방송통신기자재란?

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 
장치·기기·부품 등을 말하며,  
유선, 무선 및 정보기기 등이 해당됩니다.  
※ '방송통신기기' 또는 '정보통신기기' 라고도 함

방송통신기자재는 정부의  
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.

##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란?

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 
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 
보증하는 제도입니다.

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·제조·수입 등을  
하기 위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받고,  
제품에 인증표시를 부착한 후  
유통하여야 합니다.



중앙전파관리소 민원센터

☎ 080-700-0074(무료)

##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?

- 전파의 혼·간섭을 줄 수 있는 휴대폰, 무선랜, 무선조정기 등 무선기기
- 방송통신망에 접속하는 전화기, 모뎀, 팩시밀리, 셋톱박스 등 유선기기
- 컴퓨터, 프린터, 모니터, 디지털카메라, USB, MP3, 차량용 블랙박스 등 정보기기
- 텔레비전수상기, 전기청소기, 전기밥솥, 조명기구 등 전기용품

##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은?

제품에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 
확인하시면 됩니다.

※ 인터넷에 게시된 경우에는 제품 내용에  
인증정보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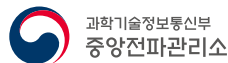
### 인증마크



2010년까지



2011년부터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 
중앙전파관리소

홈페이지: crms.go.kr  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: emsit.go.kr  
전파·방송통신민원: 080-700-0074



##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?

- 📶 불량 제품과 달리 안전합니다.
- 📶 화재, 감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- 📶 전자파 영향에 대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.
- 📶 주변기기에 간섭 및 오작동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.

## KC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을 발견하면?

중앙전파관리소 또는 지방전파관리소에  
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 
제조·수입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하면  
전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

## 해외직구한 제품의 중고거래가 가능한가요?

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제품은  
국내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,  
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 
판매할 수 있습니다.

※ 제품별(모델) 1인 1대만 가능합니다.

다만, 「관세법」 등 타법에 대해서는  
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.